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2025. 8. 26.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인공지능을 행정과 지역사회에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익적 활용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해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끝으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